

# 애견판매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



한세진 / 대전 한세진동물병원장

애견구입 후 얼마 안되어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동물보호자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러한 상담은 일차적으로 동물병원의 몫이 되어가고 있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들을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는 어린 강아지들의 보호와 건전한 애견판매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수의사들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 관계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재정경제부의 고시로서 고시란 헌법 > 법률 > 명령(대통령령) > 규칙(행정부령) 보다도 하위규정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법률적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 때문에 애견센터에서 애완동물을 판매하면서 보상문제가 언급된 계약서에 소비자로부터 서명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보다 이 계약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조항을 교묘하게 악이용해서 일부 애견센터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인쇄제작해서 무지한 소비자들로부터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재정경제부에 소비자보호법의 부분적인 개정을 건의했었지만,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률개정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소비자가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게되었을 경우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4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2001.12.4))〉

### □ 24. 애완견판매업

1) 판매후 1일 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14일 이내 폐사

####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14일 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이때에 애견판매점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불법임)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 의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 〈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그런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 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당사자가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경험이 없는 무지한 소비자가 애견센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인쇄제작된 계약서에 서명하였을지라도 이 계약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법적효력이 없음)가 됩니다.

또한 최근(2003.6.11)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구입하자마자 강아지가 병이 난 것은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라기 보다는 애견센터가 판매한 개에게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아지 구입비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이전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지나치게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물병원에 진료보수를 제공해주는 당사자인 고객의 편에 서서 이러한 법률

### 〈강아지 구입후 금방 죽으면 판매자가 보상 (동아일보 2003.06.11)〉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강아지가 병들어 죽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李鎭奎) 판사는 11일 “병든 강아지를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며 박모씨가 서울 모 애견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아지 구입비와 치료비 등을 합해 10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하자마자 강아지가 병이 난 것은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라기보다는 애견센터가 판매한 개에게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애견센터에서 60만원을 주고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구입했다가 병이 나자 미니핀으로 교환했으나 이 강아지가 또 병들어 일주일 만에 죽자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 〈 관련사이트 〉

대법원 : [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 [www.sobinet.cpb.or.kr](http://www.sobinet.cpb.or.kr)

안티 충무로(Anti-Chungmuro) : [www.pet.or.kr](http://www.pet.or.kr)

나홀로소송시민연대 : [www.nasiyen.com](http://www.nasiyen.com)

나홀로닷컴 : [www.nahollo.com](http://www.nahollo.com)

왕초보 나홀로 소송 : [www.wangchobo.co.kr](http://www.wangchobo.co.kr)



관계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에서 발췌한 소액사건심판(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소액사건심판(재판)의 재판절차와 소장 작성요령 등의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알기쉬운소송"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또한 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사이트도 다양하게 있으므로 이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 < 소액사건심판 (자료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보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